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7
----------	-----

2018년 12월 1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10.12. 권순선 의원(대표발의) 외 21명

나. 회부일자 : 2018.10.29.

다. 상정 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18년 12월 18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방대하고 복잡한 예산, 결산, 기금 등에 대한 분석과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연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서울시의원들의 예산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원들과 예산재정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과 소통·협력 작업이 요청되기에 이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예산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예산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예산정책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의 예·결산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에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선임 및 회의 개최 방법,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예산정책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안 제2조에 따르면 예산정책위원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분석,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정책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심의·의결기구 또는 자문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제7조의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도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행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 간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정리할 필요가 있음.

<표-1>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기능 비교

구 분	예산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¹⁾
기 능	1. 의원들이 요청하는 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u>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u> 3. <u>시정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u>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을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3.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u>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u> 5. <u>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u>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 관리

3 예산정책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안 제3조에 따르면 예산정책위원회는 의원 15명, 외부 전문가 10명 등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정책담당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원 구성 시 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의원과 외부 전문가의 구성 비율, 총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또한 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의장이 25명 모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회 대표권자의 지위에서 외부전문가 위촉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의 경우 일정한

1)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위원 선임과정에서 교섭단체 간, 상임위원회 간 기회 불균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참고로, 현행 정책위원회는 부의장 추천 의원 각 1명, 교섭단체 대표 추천 의원 각 1명,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각 1명, 그 밖에 외부 전문가 등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2>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교

구 분	예산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²⁾
구 성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p> <p>1. 의원 15명</p> <p>2. 예산·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p> <p>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p> <p>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p> <p>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p> <p>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p>

4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안 제4조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궐위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

- 위원의 임기와 연임, 궐위로 인한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임기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만약 임기를 조정한다면 부칙 제2조(위원회 임기에 대한 특례)도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현행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임.

5 소위원회 구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소위원회는 서울시(약 35조)와 교육청(약 10조)의 예산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이슈를 분야별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최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는 것은 소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성인원을 제한하기 보다는 위원장의 자율적 판단과 재량에 맡기는 형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 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총 4개의 소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각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음.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 등에 따른 체계자구 정비(안 제2조 등)

- 안 제2조(제4호, 제5호), 안 제4조,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11조(제1항, 제2항)의 일부 조문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맞춤법 등의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자구의 수정·보완이 요구됨.

<표-3>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 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정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을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 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정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p>사항</p> <p>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하고</u>,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u>원칙으로 하고</u>,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u>3일전까지</u>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p> <p>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p>	<p>사항</p> <p>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互選)하고</u>,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u>원칙으로 하며</u>,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u>3일 전까지</u>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p> <p>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에서</u>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p>
--	--

<p>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u>지급범위 산정방법</u> 등은 <u>의장방침으로 따로 정한다.</u></p>	<p>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u>지급범위와 산정방법</u> 등은 <u>의장이 따로 정한다.</u></p>
---	--

7 종합 의견

- 본 제정안은 약 45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예·결산 심의와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의회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결산 등의 심의과정 내실화와 지방재정 및 재정분권 관련 각종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입법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예산정책위원회의 법적 성격 명확화, 현행 정책위원회와의 일부 기능 중복 문제 해소, 위원 구성과 임기 및 소위원회 구성인원 조정 등에 관해서는 의회 내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 등에 따른 일부 조문의 체계 자구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7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20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예산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명칭을 예산정책연구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맞춤법 등의 오류가 있는 사항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 정책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조정함(안 제2조)
-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예산정책위원회”를 “예산정책연구위원회”로 한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정책위원회”를 “예산정책연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재정 분석·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정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을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정분권에 관한”을 “재정분권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개선을”을 “개선에”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예산·재정에 관하여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안 제4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호선하고”를 “호선(互選)하고”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원칙으로 하고”를 “원칙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일전까지”를 “3일 전까지”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범위 산정방법 등은 의장방침으로 따로 정한다”를 “지급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u>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u></p>	<p><u>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정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을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p>

위촉한다.

1. 의원 15명

2. 예산·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위촉한다.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예산·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 산정방법 등은 의장방침으로 따로 정한다.**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예산·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결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 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

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30일까지로 한다.